

서귀포시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2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 1개 분야, 1명[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 부서	임 용 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라급 (주35시간)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신건강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사업 관련 업무

2. 임용(계약)기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근무 기간 연장 가능하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성 별: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제한없음
- 국 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 (2008.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자격요건(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임용자격 기준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건강증진과)	<p>※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필수요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중 하나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p> <p>[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정신건강 관련 분야 실무경력</p> <p>[우대요건] 2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p>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20시간 근무)
-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름)
-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원서접수	2026. 10. 29.(목) ~ 11. 2.(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 11. 6.(금) 전·후
최종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면접시험 일·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시정공유-시정소식-알림마당」 게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7.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

분 야	예정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54,334천 원	38,759천 원	주35시간 기준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 ※ 연봉한계액은 임용일 기준 시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2.(월) [09:00~18:00] [3일]

나. 접수장소: 서귀포시청 총무과 인사팀(제1청사 본관 3층, 전화 064)760-2063)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번호 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총무과 인사팀)

▷ 방문접수: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 점심시간(11:30~12:30)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2026. 11. 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60-2063)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서귀포시 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전까지 개별 회신 예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서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정부수입인지 불인정)

9.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붙임 1)	목록별로 제출여부 표시	공통
응시원서 1부 (붙임 2)	(방문접수) 서귀포시 수입증지 구입(서귀포시 종합민원실(본관 1층) 발급) (우편접수)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5급이상: 1만원, 6(나급)·7급(다급): 7천원, 8(라급)·9급(마급): 5천원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공통
이력서 1부 (붙임 3)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해당분야 경력사항만 기재	공통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A4용지 2매 이내	공통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5)	A4용지 3매 이내	공통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붙임 6)	응시분야 선택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 표시	공통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동의 여부 기재	공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여부 기재	공통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해당자
동일계통 학과증명서 (붙임 9)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해당자

구 분	내 용	비고
경력(재직)증명서 1부 (붙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중인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원본 제출)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u>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u>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u>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 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u>하여야 함 ▷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 ※ <u>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u> 	해당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전체 기간” 발급 (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8) 미제출인 경우 해당하며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해당자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 제출 가능(원본 제출한 경우 희망 시 확인 복사 후 반환)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해당자
※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u> ▷ <u>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해외학위, 해외경력 등)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u> ▷ 최종합격자인 경우 사본으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원본을 요구 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내에 응시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 5)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6)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7)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치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8)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064-760-206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4-760-6551)